■ 별첨 1.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* 정관 변경(안) 신구조문 대비표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202	207	-1-
제2조 (목적)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	제2조 (목적)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	사업다각화 를
으로 한다.	적으로 한다.	위한 사업목적
		추가
(중략)	(중략)	
38.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	38. 프랜차이즈업, 음식업 (추가)	
(추가)	39.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	
제5조 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)	제5조 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)	발행한 주식총
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<u>50,000,000주</u> 로	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<u>100,000,000주</u>	수(수권자본금)
한다.	로 한다.	확대
제15조 (전환사채의 발행)	제15조 (전환사채의 발행)	전환사채 발행
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규모 확대
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	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	
행할 수 있다.	를 발행할 수 있다.	
1. 사채의 액면 총액이 <u>200억 원</u> 을 초과하지 않	1. 사채의 액면 총액이 <u>500억 원</u> 을 초과하지 않	
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	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	
발행하는 경우	발행하는 경우	
2. 사채의 액면 총액이 <u>200억 원</u> 을 초과하지 않	2. 사채의 액면 총액이 <u>500억 원</u> 을 초과하지 않	
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, 재무구조개선, 사	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, 재무구조개선,	
업의 다각화, 해외 진출,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국	사업의 다각화, 해외 진출,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	
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, 법인투자자, 또는 개	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, 법인투자자, 또	
인투자자 및 상대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	는 개인투자자 및 상대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	
3. 사채의 액면총액이 <u>200억 원</u> 을 초과하지 않는	는 경우 3.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	
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		
전한메시즌세류를 되어서 그 형태형에게 한된사세 를 발행하는 경우	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	
글 글엉어는 성구 ②~④ (생략)	영선한테시는세류를 뉘어어 그 영대령에게 선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	
(O ¬)	^^// = = 5이는 5구 ②~④ (현행과 동일)	
제16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	제16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	신주인수권부
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세 10도 (근무근무근무시세기 글 8)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사채 발행한도
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	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	확대
해서되다 말라고 기기 되다 사해가 한 기반기 한 기반기 하다.	T 회사되기 본의도 T T 되의 사해가 단구단T 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	<u> </u>
1. 사채의 액면 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	1. 사채의 액면 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	
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	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	
보사채를 발행하는 경우	C	
2. 사채의 액면 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	2. 사채의 액면 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	
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, 재무구조 개선, 사	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, 재무구조 개선,	
업의 다각화, 해외 진출,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국		

내외 금융기관, 및 기관투자자, 법인투자자, 또는 개	국내외 금융기관, 및 기관투자자, 법인투자자, 또	
인투자자 및 상대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	는 개인투자자 및 상대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	
하는 경우	를 발행하는 경우	
3. 사채의 액면 총액이 <u>200억 원</u> 을 초과하지 않	3. 사채의 액면 총액이 <u>500억 원</u> 을 초과하지 않	
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	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	
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	발,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	
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	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	
②~⑤ (생략)	②~⑤ (현행과 동일)	
제17조 (교환사채의 발행)	제17조 (교환사채의 발행)	교환사채 발행
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 총액이 200	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 총액이 <u>500</u>	한도 확대
<u>억 원</u>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	<mark>억 원</mark>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	
행할 수 있다.	발행할 수 있다.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동일)	
[부칙]	[부칙]	정관변경에 따
		른 부칙개정
(신설)	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	

■ 별첨 2. 이사 선임의 건

[이사 선임 세부내역]

성명	출생년월	임기	신규선임여부	주요 경력 (현직포함)
김창옥	1961.06.28	3년	재선임	-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-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부장 (1984~2015) -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상무 (2015~2018) -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사무국장 (2018~2019)